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0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2022. 11.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022.7.5.시행)에 따라 영등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 ~ 제3조)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제6조)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7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안 제8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제16조)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협력·교육·홍보 등(안 제17조~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제정 조례안은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제3조는 총칙(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 등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
 - 안 제4조~제6조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 2년마다 점검하도록 정함.
 - 안 제7조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 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서면 통보 해야 함을 명시함.

- 안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 하여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 안 제9조~제16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신분(임기, 해촉, 제척 등), 의견청취 등을 명시함.
- 안 제17조~제20조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및 교육, 홍보,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연구 의뢰, 홍보 및 각종 단체, 기구 등과의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제 65 호
----------	--------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 나.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제6조)
- 다.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7조)
- 라.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안 제8조)
-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6조)
- 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협력·교육·홍보 등(안 제17조~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2) 행정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 위원 위촉시 성별의 균형적인 참여를 위한 개선의견을 반영(제10조제3항)
- 라. 입법예고(2022. 10. 13. ~ 11. 2. / 20일간)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④ 구민과 민간단체·기업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 지속가능발전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4.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조례안 및 행정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
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전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연구 의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관

계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홍보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